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8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8일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 1. 제안이유

- 서울시 협력사업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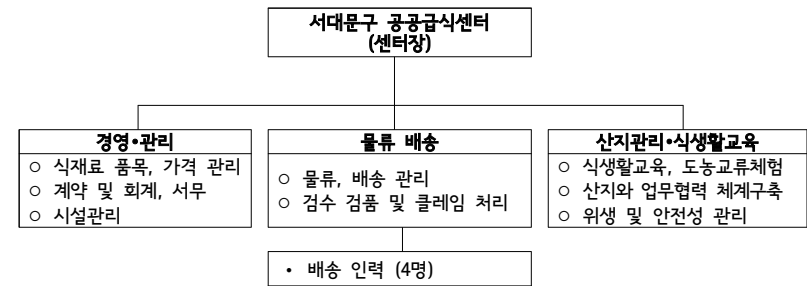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산지 기초자치단체와 1:1 매칭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친환경 식자재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및 민간조직 활용으로 수요자 요구에 탄력대응이 가능하며, 관내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신선한 식재료를 배송하고 각종 물류·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유통분야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여러 급식시설에 식자재를 배송해야 하므로, 다수의 운영인력(센터장 및 배송인력 등 8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위치 : 강서친환경유통센터(강서구 발산로40)
  - ※ 본 사업은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시에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사무실 사용 및 임대료 전액 지원 예정
- 시설규모 : 사무실(45㎡), 저온창고(1,767㎡)
  - ※ 저온창고는 여러 시설에서 공용사용
- 운영인력(안) 8명(센터장1, 직원3, 배송요원 4명)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체계 확립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안전한 유통체계 및 관리운영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지원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위탁기간 : 2018. 7. 1. ~ 2021. 6. 30.(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5.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 ④ 시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 및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8
----------	-----

2018년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3월 28일, 서대문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 4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가.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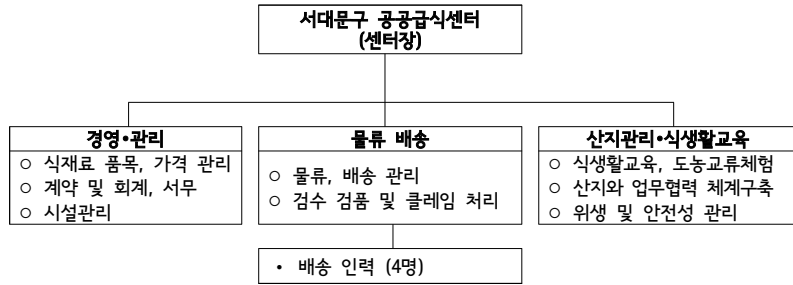
- 서울시 협력사업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강서친환경유통센터(강서구 발산로40)
  - ※ 본 사업은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시에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사무실 사용 및 임대료 전액 지원 예정
  - 시설규모 : 사무실(45㎡), 저온창고(1,767㎡)

※ 저온창고는 여러 시설에서 공용사용

- 운영인력(안) 8명(센터장 1명, 직원 3명, 배송요원 4명)



○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체계 확립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안전한 유통체계 및 관리운영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지원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위탁기간 : 2018. 7. 1. ~ 2021. 6. 30.(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일우)

####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 3. 28.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8호로 제출되어 2018. 3. 28.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됨.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주요 검토의견

##### 1)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배경과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2016년 11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고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협약식을 체결함.<sup>47)</sup>
  - 같은 해 12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을 확정하고,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시행(6개 자치구-산지 협약).
  - 2018년 상반기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자치구 별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서울시 지원)하되 사업 초기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자치구별로 구획하여 사용(강서)금천구, 강북4구 공공급식센터 사용 중(2018년도 자치구 센터 건립 추진) / (가락)강동구 공공급식센터로 임차 사용 중('18.3월 강동구센터 준공·이전])하고, 자치구에 따라 별도의 공공급식센터 설치 가능함.
  - 연차적으로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하되 2018년도에는 5개 자치구에 건립비를 지원(1개소당 10억원 한도)할 예정임.<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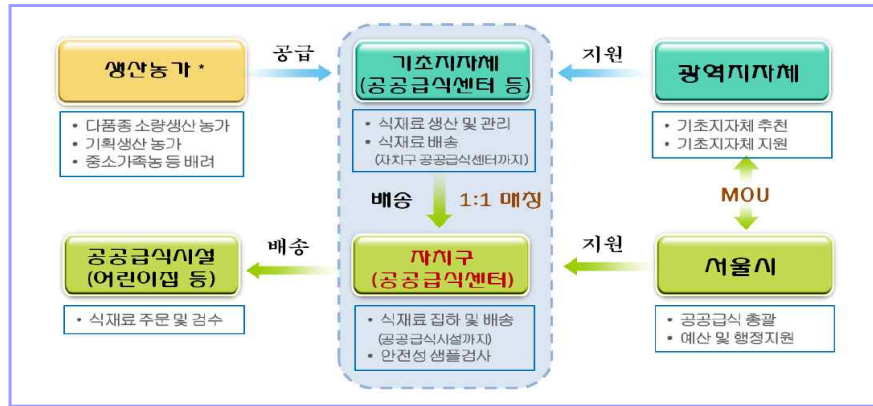
47) 2018년 상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서울시 친환경급식과-615(2018. 1. 17.)]

48)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체계



※ 타구 운영사례<sup>49)</sup>

	강동구	금천구	동북4구
참여 시설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107개소 4,992명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78개소 3,109명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72개소 8,000명
인원	8명	7명	25명
위치	서울천안경유통센터 가락센터 2층 (약120명)	서울천안경유통센터 강서센터 공동 사용 (약500명)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함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지 1:1 매칭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식재료 및 가공식품 등을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sup>50)</sup>

○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5.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 ④ 시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 및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49)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기본계획  
50) 서대문구 교육지원과-1897(2018. 2. 14.)

탁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sup>51)</sup>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위탁기간에 대한 의견

○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3년의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별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감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③ 생략

### 3) 민간위탁 내용 등에 대한 의견

○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시하는 위탁예정 사무는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이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과 대동소이하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 다만,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하여금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서대문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실제 분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 서대문구 식비보조 대상기관 현황(2017년 8월 현재)

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163개소 6,476명	80개소 3,786명 (53.6%)	3개소 80명 (37.5%)	5개소 261명 (83.3%)

####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 예산내역

구분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구비	시비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50,652	125,326 (변경전 190,019)	125,326	민간위탁금
배송비(4명)	104,290	-	104,290	
안전성검사,카드수수료 등	43,808	-	43,808	
차량구입비	100,000	-	100,000 (25,000천원×4대)	구 직접집행
차액(식비보조금) 지원	270,000	-	270,000 (10천원×4500명×6개월)	
합계	768,750	125,326	643,424	

- 아울러, 공공급식 시행단체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비영리 또는 사회적기업이거나 이를 표방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센터의 수탁업체 선정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동안의 식재료 공급에 노하우를 축적한 대규모 식재료 공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탁업체 선정시 영세한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한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sup>52)</sup>

이에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단체와의 상생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급식 질의 저하, 농촌경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도농상생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담당부서 업무분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은 교육지원과(혁신교육팀) 소관이며,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원산지 지도 점검 업무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소관이고 사회적경제 자원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의 소관임. 지난 2018. 4. 3.(화) 개최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주무부서로 보건위생과가 참석함.

- 따라서 식재료 물류·유통체계 확립, 공공급식 관련 각종 교육 지원,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위탁 내용을 감안할 때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와 함께 본 도농상생 공공급

52)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p.11

식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 지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수탁자 선정 방법

-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sup>53)</sup>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 론 요 지 : 없음

####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